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35

발의연월일: 2024. 7. 3.

발 의 자:김정호·허종식·어기구

정성호 • 윤후덕 • 김남희

전재수 · 박해철 · 박 정

이훈기 • 조 국 • 이연희

이수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대지의 안전,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,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,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법률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정보통신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 로 규정하여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, 지 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정 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설계자와 공사 감리자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기 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도화·전문화되어 가는 정 보통신설비의 설계·시공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67조제1항제1호). 법률 제 호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제1항제1호 중 "「기술사법」"을 "건축구조, 건축전기설비, 발송 배전, 건축기계설비, 공조냉동기계, 가스, 정보통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사로서 「기술사법」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67조(관계전문기술자) ① 설계 제67조(관계전문기술자) ① 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, 제4 1조,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, 제50조의2, 제51조, 제52조, 제6 2조 및 제64조와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.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,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,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 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 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(「기술사법」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 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한다)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1. 「기술사법」 제6조에 따라 1. 건축구조, 건축전기설비, 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송배전, 건축기계설비, 공조냉 자 동기계, 가스, 정보통신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 술사로서 「기술사법」-----
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